

제 호

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

1. 기관명:

2. 대표자 성명:

3. 사무소 주소:

(전화번호:)

(전자우편:)

「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위 기관을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
· 도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

직인